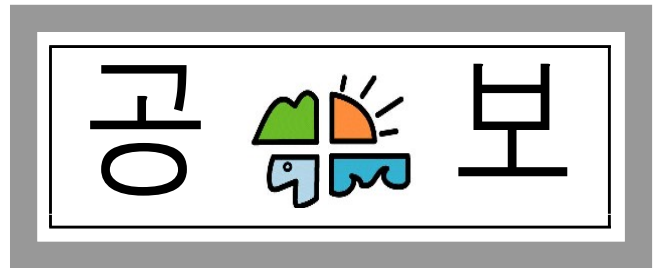


속 초 시

공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선 람	기 관 의 장



제1276호 2020년 7월 17일(금)

고 시

- 속초 도시관리계획(하천: 쌍천)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승인 고시 2

입법예고

- 속초항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3

속초 도시관리계획(하천: 쌍천)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승인 고시

1. 속초 도시관리계획(하천: 쌍천)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결정(변경)하고, 같은 법 제32조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승인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속초시청 건설도시과에 비치하여 토지 소유자 및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2020년 7월 17일

속 초 시 장

가. 속초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승인고시조서 : 아래조서 참조

나. 속초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 실음생략

1.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승인조서

가. 방재 시설

■ 하천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승인조서

구 분	도 면 표시 번호	시설 명	시설 의 종류	위치			연장 (km)	폭원 (m)	면적 (㎡)	최초 결정일	비 고
				기 점	중 점	주요 경과 지					
기정	1	하천 (쌍천)	지방 하천	설악동 산42천	설악동 산57-16 천	-	4.580	104 ~344	702,00 0	2013.4.26. (강고 제2013-143호)	
변경	1	하천 (쌍천)	지방 하천	설악동 산42천	설악동 산57-16 천	-	4.580	104 ~344	692,07 2	2013.4.26. (강고 제2013-143호)	

■ 하천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승인 사유서

구분	변경전 하천명	변경후 하천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변경	쌍천	쌍천	○ 선형변경 - 면적 : 702,000㎡ → 692,072㎡ (감 9,928㎡)	제내지 제방 법면의 외측에 위치하는 토지의 하천구역 및 방재시설 제척에 따른 선형변경

속초항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속초항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전부 개정함에 있어,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속초시 법무행정 사무처리 규칙」 제5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0년 7월 14일

속 초 시 장

1. 자치법규명 : 「속초항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 개정이유

속초항 국제항로의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운항여건을 마련하고 국내 타 항만과 비교, 화물유치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속초항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전부개정하여, 속초항을 환동해권 중심항만으로 육성하고 지역경기 활성화에 적극 기여할 수 있는 기반 마련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화주 및 해상운송기업의 용어의정의 변경 및 추가(제2조 용어의정의)

- 화 주 : (기존) 차량 및 컨테이너를 수출·입하는 자
→ (변경) 화물을 수출·입하는 자로 범위 확대
- 해상운송기업 : (기존) 여객, 차량, 컨테이너를 운송하는 국내·외 선사
→ (변경) 화물을 운송하는 국내·외 선사로 범위 확대
- 외항정기여객운송기업 추가

나. 상용여객 지원대상에서 삭제 (제3조 지원대상)

- 한·러 무사증 제도 도입('14. 1. 1.)으로 지원 불필요

다. 손실보전금 규정 삭제 (제4조 지원범위)

- 손실발생액 산정기준이 명확하지 않을 경우, 지원목적에 부합되지 않은 사례가 발생하여 운항지원 기준마련을 위해 삭제

라. 화물유치장려금 지원범위 확대 (제4조 지원범위)

- (기존) 차량, 컨테이너 → (확대) 차량, 컨테이너, 건설장비, 벌크화물

4. 자치법규안 : 붙임

5. 의견제출

가. 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 8. 3일까지 아래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속초시장(참조 : 신성장사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의견 제출자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법인·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등

제정(안)	수정(안)	수정이유

나. 의견제출 장소 및 문의처

- 주 소 : 우) 24826 강원도 속초시 중앙로 183
속초시청 신성장사업과 환동해물류팀
- 연락처 : 전화(033-639-2277), 팩스(033-635-8367)

다. 의견제출 방법 : 서면, 전화, 팩스, 전자문서 및 직접방문 등

6. 기 타

기타 자세한 사항은 속초시청 신성장사업과 환동해물류팀(033-639-2226)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초항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속초항 국제항로의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운항여건을 마련하고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하여 속초항을 이용하는 화주, 해상운송기업, 외항정기여객운송기업, 항만하역기업 및 국제물류주선기업 등에 대하여 행·재정적 지원을 함으로써 속초항을 환동해권 중심항만으로 육성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속초항 활성화 지원에 관하여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화주”란 속초항을 이용하여 화물을 수출입하는 회사를 말한다.
2. “해상운송기업”이란 속초항에서 국제항로를 이용하여 화물을 운송하는 국내외 선사를 말한다.
3. “외항정기여객운송기업”이란 해상운송기업 중 「해운법」에 따라 속초항과 외국항 사이를 일정한 항로와 일정표에 따라 운항하는 해상여객운송기업을 말한다.
4. “항만하역기업”이란 속초항에서 화물을 하역하기 위해 「항만운송사업법」에 따라 항만하역업으로 등록한 기업을 말한다.
5. “국제물류주선기업”이란 속초항에서 화물을 수출입하기 위해 「물류정책기본법」에 따라 국제물류 주선업으로 등록한 기업을 말한다.

제3조(지원 대상) 속초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

1. 화주
2. 해상운송기업
3. 외항정기여객운송기업
4. 항만하역기업
5. 국제물류주선기업
6. 그 밖에 속초항 활성화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관 또는 기업

제4조(지원 범위) 재정지원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내외 해상운송기업과 외항정기여객운송기업의 국제항로 운항장려금
2. 속초항을 이용하여 컨테이너, 자동차, 건설기계, 벌크 화물을 수출입하는 화주, 해상운송기업, 외항 정기여객운송기업, 항만하역기업, 국제물류주선기업에 대한 화물유치장려금
3. 속초항을 이용함에 따라 타 항만과 비교하여 추가로 발생하는 비용의 일부
4. 제13조 및 속초항 활성화를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지원기준 등) 제4조에 따른 지원의 기준·규모·시기 등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6조(지원예산 확보) ① 시장은 강원도지사와 「강원도 무역항 국제항로 활성화 지원 조례」에 따라 매년 필요한 예산을 분담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도비와 시비의 분담비율은 규칙으로 정한다.

③ 제4조제4호에 해당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속초시의 예산범위에서 별도로 지원예산을 확보할 수 있다.

제7조(지원신청) ① 제4조에 따라 지원을 받으려는 자는 시장에게 지원금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금 신청서 및 첨부 서류 등 세부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8조(지원금의 반환) 시장은 신청자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재정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해야 한다.

제9조(지원금의 정산 등) 재정지원을 받은 자는 당해 사업이 완료되면 시장에게 정산보고를 하여야 한다. 다만, 적법한 절차에 따라 사후에 신청하여 지원받는 경우에는 정산보고를 생략할 수 있다.

제10조(속초항활성화 지원사업심의위원회) 시장은 제4조제4호와 관련하여 지원사업의 효율적 운영 및 지원 적합여부를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속초항활성화 지원사업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를 둔다.

제11조(심의위원회 구성) ① 심의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1인 이내로 하되, 위원장은 부시장이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심의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

명 또는 위촉한다.

1. 속초시의회 의원 2명
2. 속초시 일자리경제과장, 속초시 신성장사업과장
3. 동해지방해양수산청 속초해양사무소장
4. 속초세관 수출입 업무 소관과장
5. 지역상공인 대표 및 지역 수출입 업체 대표
6. 대학교수 및 지역연구기관 대표
7. 그 밖의 항만물류분야 전문가 또는 현장 실무경험을 가진 사람

③ 위촉직 위원의 경우, 한쪽 성의 구성 비율이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한다.

④ 심의위원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가 끝나면 자동으로 해산한다.

제12조(심의위원회 운영) ①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시장이 요구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개최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과 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② 위원장은 심의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하고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계공무원 또는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④ 심의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환동해물류업무 담당이 된다.

⑤ 회의에 출석한 위원 및 관계전문가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속초시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13조(그 밖의 시책추진 등) 시장은 속초항 활성화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각종 지원 시책 추진과 재정적인 지원을 할 수 있다.

1. 예선·도선사 유치
2. 수산물의 수출입 촉진
3. 속초항 항만시설 환경개선 및 여객 편의시설 개선
4. 속초항 활성화를 위한 항만이용 및 화물 증대 등을 위한 각종 시책

제14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속초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